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진종오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139 발의연월일: 2024. 10. 31.

발 의 자:진종오·박수영·김용태

서명옥 • 김형동 • 김상욱

김태호 • 박준태 • 이성권

박정하 · 정성국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 용도 중 하나로 저소득 층의 체육활동 지원이 규정되어 있음.

그러나 저소득층으로 지원 대상이 한정된 현행 규정으로 인하여 장애인이나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제약으로 체육 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다른 취약계층은 기금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음.

이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지원 대상을 장애인 등 기금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으로 확대하여 체육 활동의 참여 기회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22조제1항제11호).

법률 제 호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1항제11호 중 "저소득층"을 "저소득층,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22조(기금의 사용 등) ① 국민	제22조(기금의 사용 등) ①		
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			
사업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사			
용하고,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			
계정은 「사행산업통합감독위			
원회법」 제14조의4에서 정하			
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.			
1. ~ 10. (생 략)	1. ~ 10. (현행과 같음)		
11. <u>저소득층</u> 의 체육 활동 지원	11. 저소득층, 장애인 등 대통		
	<u> 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</u>		
11의2. ~ 12. (생 략)	11의2. ~ 12. (현행과 같음)		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		